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7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이건태 · 진선미 · 박균택
위성곤 · 문진석 · 전용기
박상혁 · 박희승 · 최혁진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25.9.7.)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 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u>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⑤ 제1항부터 <u>제4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u>제5항까지의</u> ----- ----- ----- -----.